

宇宙活動의 商業化政策에 대한 批判

—特히, 方法論으로서의 高度產業化社會에 있어「社會的協同業務의 精神」과 宇宙條約 第1·6條와의 關係에 대한 國際法學的 考察—

The Critics on Commercialized Space Activities, Especially as Methodology: As The Meta International Law Scientific Approach to The Relation between The Treaty of Space Law "Article 1 and 6" and The "Geist of Social Collaboration" in the "Hyper Industrialized Society"

米田 富太郎*

金 斗 煥** 翻譯

〈目 次〉

1. 「社會的協同業務의 精神」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現代的 狀況은 무엇인가?
2. 「社會的 協同義務의 精神」의 現代的 狀況의 內容과 意味는 무엇인가?
3. 그렇다면 「社會的 協同業務의 精神」의 이와같은 變質은 國際法學에 있어 어떠한 問題가 있는가?
4. 이 問題를 「宇宙活動의 商業化政策에 대한 批判」으로서 展開되고 있는 必然과 意義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5. 國際法學은 이와같은 現實을 認識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인가?
6. 方法에 관한 問題(1)——메타國際法學的 考察
方法에 관한 問題(2)——國際法學에 있어서 對象으로서의 「精神」과 「歷史相對主義」의 方法的 意義에 관하여

* 日本中央學院大學 客員教授

** 崇實大學校 法學研究所長, 教授, 法學博士, 韓國航空宇宙法學會 會長

1. 「社會的協同業務의 精神」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現代的 狀況은 무엇인가?

· 國民國家와 國民經濟라고 말하는 歷史的 秩序形成의 文脈에 對應하여 生成, 發展되어 왔던 「社會的 協同業務의 精神」(“國民全體에 있어 必要로 하 고 國民全體에 利益을 가져 오기 때문에 國民全體에 의하여 履行되고 負擔되는 것”=公益務의 精神)은 「國家의 發展의 存續에 關係된 秩序形成業務의 承認과 그곳에의 主體的參加(業務cost를 負擔하고 그 國民全體의 利益을 配分的正義 準則에 따라 受容하는 것도 包含)을 構成要素로 하는 政治的 意思」의一般的인 表現이다.

이와 같은 意味에 있어 그 意思는 國家의 秩序形成業務로서의 國家的 宇宙開發利用政策의 正當化에 不可缺한 政治的意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宇宙開發에 主體的으로 參加하는 根據가 되고 있다.

· 그 政治的 意思는 專屬的 地域團體가 國家로의 解體와 함께 國民國家의 形成과 發展에도 關係가 될 뿐만 아니라 政府의 政治的性格에 의하여 多樣한 政治的 意味를 갖게 된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뷔르멜 18日』—“社會의 構成員의 協同利害는 각각 社會로 부터 分離되어 보다 높은 一般的利害關係가 社會에 對立되고 있으며 社會構成員의 自主的 活動의範圍로 부터 分離되어 政府活動의 對象이 되고 있다”.

· 現代國際社會의 歷史的 變遷은 固有, 自律化된 社會的인 意味를 가지고 있는 社會와 그 秩序構築을 必然化하고 있는 것 中에 「社會的 協同業務의 精神」의 國際化를 强하게 意識하고 要求하고 있는 段階에 到達되고 있다 (諸國民에 있어 必要로 하고 있으며, 諸國民에게 利益을 가져 오기 때문에, 諸國民에 의하여 履行되고 負擔되고 있다).

2. 「社會的 協同義務의 精神」의 現代的 狀況의 內容과 意味는 무엇인가?

· 「社會的 協同業務의 精神」의 國際化의 現代的 狀況, 즉 그 狀況與件의 큰 틀은 產業의 全般的인 優越로서 掌握되고 있는 高度產業化社會에 있다. 그것은 高度產業化社會의 管制塔에 位置하고 있는 行為者(actor)이고 「國際的 資本總體」(資本과 經營의 國際的 移動을 核으로하고 있는 大規模多國籍企業

의 호트워-크)·「國家運營에 關係된 테크노래트」)·「아카데미즘(academism)」이라고 말하는 「機能橫斷的 컴프렉스(complex)」와 그의 協動論理인 “市場과 產業의 다이나미즘(具體的으로는 自由의 抽象化乃至 物神化와 義務의 外部化)에 一切를 適合하게하는 “超國境(trans)”이 支配되는 狀況下에 놓여 있다.

- 이 狀況에 定立되어 「社會的協同業務의 精神」은 國際化에 隨伴되어 “새롭고 異質의 内容”이 造成되고 있다.

그것은 「社會的 協同業務의 精神」을 “秩序構築業務로부터 自由乃至 解放시키고 있다는 점과 參加를 階層화하고 있다”는 것은 變質되어 가고 있는 現狀이다.

3. 그렇다면 「社會的 協同業務의 精神」의 이와같은 變質은 國際法學에 있어 어떠한 問題가 있는가?

- 「社會的 協同業務의 精神」의 國際化는 國際社會의 法現象을 認識對象으로 하고 있는 國際法學에 있어 國際法의 存在基盤이 되고 있다. 國際社會의 固有·自律의 社會의 構築과 그곳에서 秩序形成을 協同業務로 하고 있으며 諸國民의 主體의 參加를 여하히 하고 있는가의 問題와 關係될 뿐만 아니라 秩序形成의 役割를 擔當하고 있는 國際法의 能的機能과 發展을 確保하기 위하여 살피어야만 되는 問題의 對象이 되고 있다. 결국 「社會的 協同業務의 精神」의 國際化를 高度產業化社會의 論理로부터 여하히 解放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그 問題로 浮刻되고 있다.

4. 이 問題를 「宇宙活動의 商業化政策에 대한 批判」으로서 展開되고 있는 必然과 意義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 1) 먼저 宇宙開發利用은 무엇때문에 政府에 의하여 主導되어 왔으며, 하지 않으면 안될 「社會的 協同業務」等에 관하여 檢討할 必要가 있다. 이것에 관하여서는 두 가지의 理論과 現實이 있다.

- 두 가지의 理論(「非排除性」理論과 「非競合性」理論—政府獨占乃至 介入의 正當化論)

- ① 市場시스템 國家에 있어서는 “自由競爭의 弊害乃至 그의 不可能性”

(「市場의 失敗」=公共材 또는 費用遞減·自然獨占 等 그의 外部效果)

② 計劃經濟시스템 國家에 있어서는 資源의 效率的利用과 分配.

· 두가지의 現實—

① 宇宙開發利用은 資源의 莫大한 使用과 그의 權力的 運用 또는 分配의 不均衡 等이 있을 때에는 權力의 合理化가 必要하다.

② 尖端的 科學技術의 開發應用의 集中的 部門으로서 宇宙開發利用은 現實 國家의 發展에 깊이 더욱 密接하게 關係되어 있다. 한편 宇宙開發과의 關係로 國家運營을 擔當하고 있는 테크노크라트, 企業(多國籍企業 乃至 大企業) 等 아카데미즘(宇宙 및 尖端的 技術에 關聯됨)의 發展과 存在理由와 도 關係되고 있다.

2) 宇宙活動의 商業化政策은 「機能的 橫斷컴플렉스」에 의한 國家의 인후라(infra)化政策의 進步에 의하여 일어나고 있다.

· 現代의 宇宙活動은 그의 樣式으로서 「國家의 손」으로부터 分離되어 이 것들 “「機能橫斷的 컴프렉스」의 制御에 基礎한 「國家名」에 의한 宇宙活動”으로서의 實體를 가지게 되어왔다. 그 內容으로서 “市場原理에 의한 宇宙活動”으로서의 實體를 지니게 되었다.

宇宙活動의 歷史類型으로서의 商業的 宇宙活動政策이 이것에 該當된다.

③ 宇宙條約 第1·6條는 規範레벨에 있어서 商業化를 解釋上 可能하게 하는 規範的 體系가 있을 뿐만 아니라 立法趣旨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結果的으로 이와같은 可能性을 豫定한 것으로서 斷定되는 不可避한 過程을 가지게 되었다. 「宇宙活動의 自由」宣言과 NGO의 宇宙活動承認과 「國家로의 直接的 責任歸屬의 確定」과 같은 規範體系가 그것이다. 現實的으로 그것은 宇宙活動의 商業化를 實現케 하는 解釋上의 根據로서 援用되고 있으며, 評價되고 있다.

④ 그러나 第1·6條의 解釋으로부터 法的으로 演繹되어 國家政策화가 되고 있는 商業的 宇宙活動은 그 實行에 있어 公的 資源과 그 利用을 不可缺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意味에서 「社會的 協同業務의 精神」을 不可缺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目的으로서의 秩序構築意思」로부터 自由로울 수 없는 商業的 宇宙活動政策은 逆으로 이와같은 秩序構築原理로부터 自由를 指向하고 있으므로 國家의 宇宙開發利用政策으로서 正當化가 될 수 없는 矛盾을 包含하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으며, 批判되고 있다.

結局, 高度產業化社會에서 管制塔으로서의 이와같은 「機能橫斷的 커프렉스」가 있기 때문에 宇宙活動은 宇宙開發을 左右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國家資源의 有效利用이 必要로 하게 되며 그것때문에 「社會的 協同業務」와 그의 「精神」을 國際化라고 말하는 歷史的 變遷의 文脈에 移動(shift)되어 國家로부터 解放을 達成함과 동시에 그것은 「機能的 橫斷 커프렉스」가 私有財產으로 되게 된다.

5. 國際法學은 이와같은 現實을 認識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인가?

- 원래 國際法學이 이 問題를, 그의 社會的 事象을 對象으로 하여 檢討하는 意義는 宇宙開發利用의 現實科學의 思考過程 等 方法論上의 問題를 原理의으로 摸索하려는 實質, 例를 들면 科學과 神秘, 說明과 豫測, 觀察과 方法, 理論과 實踐이라고 말하는 科學 一般에 걸친 方法論上의 原理의課題에 關係된다는 것과 더구나 이것이 人類의 將來에 關係되는 큰 問題로서 重要性이 있게 된다.
- 그러나 國際法學(國際宇宙法學)은 社會認識을 위하여 하나의 專門的인 知識樣式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社會的 協同業務」와 그의 「精神」의 國際化가 提起되고 있는 現實的問題의 一例가 宇宙開發利用의 商業化라는 面에서 나타나고 있는 現實에 對하여 이 事實을 解說하고 그곳에서 固有의 國際法學의 問題를 發見하고 解決되어야만 된다는 일에 대하여 成功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國際法學은 이 問題가 國際法學의 메크로(macro)의 思考過程의 存在形態에 反省을 促求하는 意味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留念하고 있는가?

—肯定的인 答을 내릴 수는 없게 된다.

- 國際法學에 있어서 이와같은 社會的 構想力 및 批判的 分析의 視角의 缺如 乃至 消極性은, 國際法學의 메크로(macro)의 思考過程의 個性(接近方式이 裁判中心主義와 理論內容의 非一般性)으로부터 自然히 나타나게 되며 社會認識을 위한 專門的 知的樣式으로서의 國際法學의 問題性 等이 指摘되고 있다. 國際法學 그 自體의 問題對象화가 不可缺한 理由가 여기에 存在하게 된다. メ타國際法學의 考察이라는 것은 이와같은 問題構築을 根基로 하

여 國際法學 그 自體를 問題對象化하는 國際法學研究의 한가지 方法이라고 말할수가 있다.

- 國際法學의 研究方式에 있어 多樣한 接近方法을 構築한다는 것은 理論內容에 있어 ① 科學 一般에게 適用되는 “一般理論”인가 또는 ② 國際法學固有의 “一般理論”을 構築하는냐에 달려 있다.

6. 方法에 관한 問題(1)——메타國際法學的 考察

- 科學으로서의 國際法學 그 自體를 對象으로 하여 檢討되어 왔던 理論이다. 그것은 國際法學의 研究方法을 分析하고 그 研究方法을 全體로 하여 메크로에 特徵을 두고 있는 思考過程을 抽出할 때도 있다.

- 國際法學을 全體的·總合的으로 把握하고자 하는 하나의 觀點에서 그 必要性이 있게 된다. 이것은 相對的으로 高度로 完成된 法學으로서의 國際法學이 스케일이 큰 社會歷史의 事態等, 變動에 直接的으로 關係되고 있다는 점으로 부터 國際法學이 未完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다 高度로 編成될 必要가 있으므로 國際法學 그 自體가 問題가 되어 對象化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方法에 관한 問題(2)——國際法學에 있어서 對象으로서의 「精神」과 「歷史相對主義」의 方法的 意義에 관하여

- 對象으로서의 「精神」의 意義는 可能한 限, 問題對象等 事象의 全體的掌握 乃至 全體的 認識을 할 必要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瀕死의 狀態에 있는 마르크스主義의 파라다임(paradigm)의 有效性 乃至 可能性을 摂索할 必要가 있기 때문이다. 아나-루 歷史學의 方法的 有效性은 이것을 論證하고 있다.

- 이것은 「精神」의 存在形態, 事象에로의 그의 作動의 樣態는 「外生的要因」으로부터 特定하면서 說明하는 方法으로 「歷史相對主義」理論의 有效性에 두고 있다.